

직제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『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정관』 제7장 제2절 및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『학칙』 제3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우리 대학교의 직제는 법령, 정관 및 기타 각종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사무분장)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.

제4조(교직원) 우리 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교원과 직원 및 조교를 둔다.<개정 2019.1.23.>

1. 교원은 전임교원(정년계열, 비정년계열)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.<개정 2019.1.23.>
2. 직원은 일반행정직, 특수행정직으로 구분한다.<개정 2019.1.23.>
3. 교원은 학생을 교육·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.
4. 직원은 분장된 업무를 담당한다.
5. 직원의 정원은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정관 제74조에 의한다.
6. 조교는 행정조교와 학사조교로 구분하며, 교육·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.<개정 2019.1.23.>

제2장 총장

제5조(총장) ① 총장은 우리 대학교를 대표하고 교무를 통괄하며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
② 총장은 우리 대학교 정관 및 직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직원을 임면 제청하고 보직을 부여한다.

제6조(부총장) ① 우리 대학교에 대외협력부총장을 둔다.<개정 2019.10.02.>

② 대외협력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한다.<개정 2019.10.02.>

제7조(총장 직속기구) ① 총장직속으로 대외협력실을 둔다.<개정 2019.12.30.>

②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총장직속의 특별사업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신설 2016.8.22.>

제3장 본부

제8조(교학지원처) ① 교학지원처에 교무지원팀, 교육혁신팀을 둔다.<개정 2016.8.22.><개정 2017.5.10.>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1.21.><개정 2021.7.22.>

② 교학지원처에 교수학습지원센터, 원격교육지원센터, 사회봉사센터를 둔다.<개정 2016.8.22.><개정 2017.5.10.>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7.22.>

③ 처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6.8.22.><개정 2017.5.10.>

④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원격교육지원센터장, 사회봉사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6.8.22.><개정 2017.5.10.><개정 2019.1.23.><개정 2021.7.22.>

제9조(기획조정처) ① 기획조정처에 기획팀과 예산팀을 둔다.<개정 2016.8.22.><개정 2017.5.10.><개정 2017.9.25.><개정 2021.1.21.>

② 처장은 교원이나 직원으로 보하고 부처장은 교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7.5.10.><개정 2017.9.25.>

③ <삭제 2017.9.25.>

제10조(입학홍보처) <삭제 2019.1.23.>

제10조 1(입학홍보처) <신설 2021.07.22.>

- ① 입학홍보처에 입학지원팀을 둔다.
- ② 입학홍보처에 장애학생지원센터, 학생상담센터, 학생종합서비스센터, 취업창업지원센터를 둔다.
- ③ 처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.
- ④ 취업창업지원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하고, 장애학생지원센터, 학생상담센터, 학생종합서비스센터장은 교원이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제11조(행정지원처) ① 행정지원처에 총무팀과 재무팀을 둔다.<개정2016.8.22.><개정2017.5.10.><개정 2017.09.25.><2021.01.21.>

- ② 처장은 교원이나 직원으로 보하고, 부처장과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7.5.10.><개정 2017.09.25>

제11조의 2(전북희망캠퍼스 학과 및 대학원) 전북희망캠퍼스에 개설하는 학과는 학칙 제3조에 의하며 대학원은 대학원학칙 제4조에 의한다.<신설 2016.8.22>

제4장 경기드림캠퍼스<개정 2016.2.15.>

제12조(학과 및 대학원) 경기드림캠퍼스에 개설하는 학과는 학칙 제3조에 의하며 대학원은 대학원학칙 제4조에 의한다.<개정 2016.2.15.>

제13조(종합지원실) <삭제 2017.5.10>

제14조(경기드림캠퍼스개발단) <삭제 2016.8.22>

제14조의 2(경기드림지원실) <삭제 2021.01.21.>

제5장 대학원

제15조(대학원) ① 문화예술대학원, 사회복지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각 원장은 교수나 부교수로 보한다.<개정 2016.8.22>

- ② 대학원에 대학원교학팀을 두고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6.8.22.><개정 2017.5.10.><개정 2017.09.25>

- ③ 대학원의 각 학과(전공)에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을 둘 수 있고, 학과장(전공주임교수)은 교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7.5.10>

- ④ 대학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특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팀을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교원이나 직원으로 보한다.

제6장 학부(과)

제16조(학과) ① 각 학부(과)에 학부(과)장을 둔다.<개정 2017.5.10>

- ② 각 학부(과)장, 2년 이상 재직한 교원으로 한다.<개정 2017.5.10>

제7장 부속·부설기관

제1절 부속기관

제17조(학생생활관) ① 우리 대학교에 학생생활관을 경기드림캠퍼스에 두며 관장은 교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6.2.15.>

- ② <삭제 2017.09.25>

- ③ 학생의 지도와 생활관의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.

- ④ 생활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8조(정보도서관) ① 도서와 자료의 수집, 정리 및 관리, 연구 및 학습활동 지원과 전산사무 처리를

위해 정보도서관을 두며 관장은 교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6.8.22><개정 2017.5.10.>

② <삭제 2017.5.10>

③ 도서관에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일반직원 또는 계약직원으로 보한다.

④ 정보도서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9조(신문방송국) <삭제 2016.8.22>

제20조(국제교류교육원) ① 국제교류교육원에 국제교류교육팀과 국제교류센터, 국제교육센터를 둔다.
<개정 2016.8.22.><개정 2017.5.10.><삭제 2017.9.25.><개정 2019.1.23.>

② 원장은 교원으로 보한다.

③ 국제교류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제교류교육원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제2절 부설기관

제21조(평생교육원) ① 평생교육원을 전북희망캠퍼스와 경기드림캠퍼스에 두며 원장은 교원으로 보한다.
<개정 2016.2.15.>

②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생교육원규정으로 따로 정한다.

③ 경기드림캠퍼스 평생교육원에 게임교육센터를 둔다.<신설 2017.5.10.>

④ 원장과 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한다.<신설 2017.5.10.>

제22조(원격평생교육원) 원격평생교육원을 전북희망캠퍼스와 경기드림캠퍼스에 두며 원장은 교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6.2.15.><개정 2016.8.22><개정 2017.5.10.>

제23조(문화예술교육원) <삭제 2019.1.23.>

제24조(부설연구소) ① 우리 대학교에 필요한 연구소를 둔다.<조이동 2016.8.22>

② 각 부설연구소에 연구소장과 간사를 둔다. 연구소장은 교원으로 보하고 간사는 교원이나 직원으로 보한다.

③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8장 산학협력단

제25조(산학협력단) ① 우리 대학교에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‘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’(이하 “산학협력단”이라 한다)을 경기드림캠퍼스에 둔다.<개정 2016.8.22>

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, 단장은 교원으로 보하거나 관련분야 전문경영인으로 보한다.

③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팀을 두며 팀장은 직원으로 보한다.

④ 예원예술대학교 학칙 제63조의2에 의해 설립한 학교기업의 업무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한다.

⑤ 산학협력단에는 예원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라 별도의 사업기구 및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규정으로 정한다.

제9장 위원회

제26조(위원회) ① 대학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0장 기타

제27조(기타 기관)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기관의 직제에 관한 사항은 당해 기관의 규정에 의한다.

제28조(복수팀장 보임에 대한 특칙) 총장은 부서의 규모와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행정부서의 팀장을 복수로 보할 수 있다.<개정 2016.8.22.><개정 2017.5.10>

4-1-1-3 직제 규정

제29조(개정) 이 규정 중, 법인 및 예원예술대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임용, 보수, 신분보장, 징계 등과 관련한 조항의 제정 및 개폐는 각각의 심의기구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.<신설 2019.1.23.><개정 2021.8.27.>

부 칙(제정 2015. 1. 13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폐지규정) 종전의 직제규정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(2016. 2. 15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8. 22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5. 1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25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0. 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법인 승인일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9. 12. 30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1. 21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7. 2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8. 27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